

#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

의안 번호	2487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4. 4. 25.

제출자 : 달성군수



## 1. 제안이유

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 및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, 군민이 신뢰하는 군정을 실현하고 다양한 청렴도 향상 활동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- 나. 기관장의 책무 및 공직자의 청렴 의무(안 제3조 ~ 제4조)
- 다.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 수립 및 협력체계, 사업 등(안 제6조 ~ 제10조)
- 라. 청렴도 향상 지원을 위한 포상(안 제15조)

## 3. 조례안 : 따로 붙임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, 제3조, 제7조 (※ 붙임)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없음
- 다. 기타
  - (1) 입법예고(2024. 3. 25. ~ 4. 15.) 결과 : 의견 없음
  - (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  - (3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- (4) 부패영향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- (5) 부서합의 : 해당사항 없음
- (6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##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 신뢰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고 청렴문화를 조성·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공직자”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가. 대구광역시 달성군(「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에 따른 본청·직속기관과 읍·면 및 읍·면출장소를 말하며, 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 소속 공무원, 청원경찰, 공무원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

나.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(이하 “군 의회”라 한다) 소속 공무원, 청원경찰, 공무원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

다.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·출연기관(이하 “출자·출연기관”이라 한다)의 임직원  
라. 그 밖에 군이 출자·출연하여 설립한 단체(이하 “출자·출연단체”라 한다)의 임직원

2. “기관장”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,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, 출자·출연기관장 및 출자·출연단체장을 말한다.

3. “부패행위”란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

4. “청렴마일리지 제도”란 청렴활동 참여도, 청렴의무 위반 여부 등을 조사·평가하여 공직자 또는 그 공직자가 속한 부서에 가·감점의 점수를 부

여하고 성과평가 등에 반영·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.

제3조(기관장의 책무) 기관장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공직자의 청렴 의무)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·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5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청렴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.

제6조(종합계획 수립·시행 등) ① 기관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(이하 “종합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전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등 실태
2.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, 추진목표 및 전략
3.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·추진과제
4. 그 밖에 기관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기관장은 종합계획의 수립·시행을 할 때 대구광역시 달성군민(이하 “군민”이라 한다)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.

제7조(사업 등) 기관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문화 활성화 사업
2. 청렴 교육 및 홍보 사업
3. 반부패·청렴도 평가 및 조사
4. 부패방지시스템 구축·운영
5. 그 밖에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8조(예산지원) 기관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·단체 등에 대

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9조(청렴정책추진단 구성) 기관장은 청렴도 향상 대책 마련을 위하여 청렴 정책추진단을 구성하여 조직 내 청렴공감대 확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청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.

제10조(협력체계) 기관장은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관련기관·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11조(청렴도 평가) ① 기관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청렴도 평가(이하 “평가”라 한다)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기관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.

③ 공직자는 자료제출, 설문참여 등 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④ 기관장은 평가 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12조(청렴교육 및 홍보) ① 기관장은 공직자가 청렴자세를 확립하고 청렴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기관장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사항을 알림으로써 군민이 해당 기관의 청렴 행정 실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.

③ 기관장은 청렴도 향상 및 시책 추진 홍보를 위한 홍보물품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.

제13조(청렴마일리지 제도의 운영) ① 기관장은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청렴마일리지 가점 및 감점지표 등 청렴마일리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관장이 별도로 정한다.

제14조(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) ① 기관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할 수 있으며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7조령따라 개인 정보를 제3자롭게 제공할령있다.

② 제1항령 따른 개인정보(성명, 소속, 전화번호 등을 말한다)는 제7조령 따

른 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·이용되어야 한다.  
제15조(포상)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  
위에서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.

1.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또는 우수공직자
2.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·응모하여 당첨된 민간인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4. “부패행위”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

가.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

나. 공공기관의 예산사용, 공공기관의 재산의 취득·관리·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

다.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, 권고, 제의, 유인하는 행위

제3조(공공기관의 책무) ① 공공기관은 건전한 사회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.

② 공공기관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,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.

③ 공공기관은 교육·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소속 직원과 국민의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공공기관은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 교류와 협력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제7조(공직자의 청렴의무)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